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1017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6. 9 선고 2021나1275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101736 판결

전 문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5.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20. 접수 제42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은 형제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0. 11.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6. 4. 2014느174 한정치산선고 등 사건에서 망인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하고, D을 망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심판이 2013. 6. 25. 확정되어 D은 2013. 6. 25. 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7. 1.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한정치산선고가 실효됨으로써 D의 망인에 대한 후견도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D이었는데, 2019.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9. 5. 17. 체결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20.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D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50,691,314원, 예비적으로 후견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850,691,31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0가합101361호), 위 법원은 2021. 4. 23. “D은 원고에게 17,12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1.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D은 2010. 7. 23. 부천시 E 전 3990㎡(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 토지의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03,735,000원(= 226,500원/㎡ × 3990㎡)이고,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45,630,000원(= 237,000원/㎡ × 3990㎡)이다. E 토지에는 2019. 5. 16.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D에게 850,691,314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7.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5. 17.경 D의 적극재산은 903,735,000원(E 토지의 가액)이고, 소극재산은 망인에 대한 채무 17,120,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F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경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수, 판사 박찬범, 판사 김태현

목 록

1. 경기도 부천시 G 대 267.4㎡
2. 경기도 부천시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상 4층 단독주택
- 1층 21.6㎡
- 2층 156.26㎡
- 3층 156.24㎡
- 4층 156.24㎡
- 옥탑1층 15.3㎡